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최혁진의원·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6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3
2.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6
3. 조문별 검토	12
가. 목적 및 공공기관의 책무(안 제1조 및 제3조)	12
나. 정의(안 제2조)	14
1) 사회적 가치의 정의(안 제2조제1호)	14
2) 공공기관의 정의(안 제2조제2호)	18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23
라.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제7조)	29

마. 사회적가치위원회 등(안 제8조~제10조)	32
바. 성과평가 및 포상 근거(안 제11조 및 제12조)	38
사. 민간참여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안 제13조 및 제14조)	4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혁진의원·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0.

다.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최근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장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

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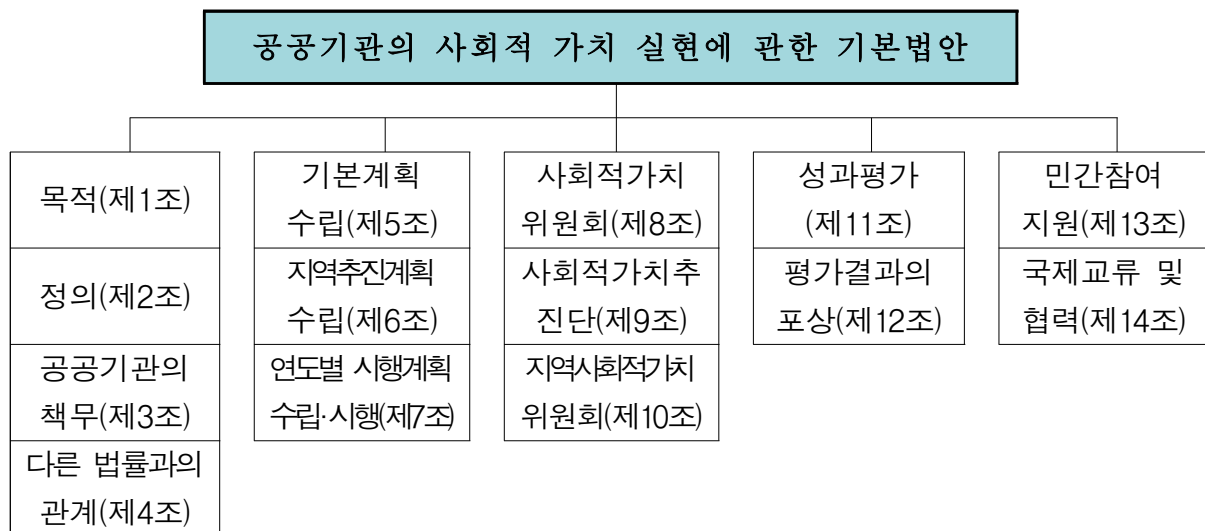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논의 경과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함.

제정안은 사회적 가치 및 공공기관의 정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성과평가 및 포상, 민간참여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등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사회적 가치”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②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지역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③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사회적가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④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등임.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2조	○ “사회적 가치”의 정의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15개의 가치를 예시로 듦
	○ “공공기관”의 정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포함
제3조	○ 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제5조 ~ 제7조	○ 기본계획, 지역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시·도지사는 각각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각각 1년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제8조 ~ 제10조	○ 사회적가치위원회 및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계획 수립,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둠(시·도지사의 경우는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둠)
제11조 ~ 제12조	○ 성과평가 및 포상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에 따라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음
제13조	○ 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사업자 등을 우대할 수 있음

참고로, 동 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¹⁾이 기발의되어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한편, 과거 논의현황을 살펴보면, 제19~21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바 있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음. 과거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회적 가치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

구분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제19대 국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문재인의원	1910886	임기만료폐기
제20대 국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의원	2001624	임기만료폐기
		박광온의원	2009920	임기만료폐기
제21대 국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박광온의원	2100001	임기만료폐기
		홍익표의원	2103712	임기만료폐기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44호, 2024. 6. 28)

2.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제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운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책 추진체계를 기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21대국회에서는 2번의 법안소위와 1번의 안건조정위를²⁾ 통해, 제20대국회에서는 1번의 공청회와 2번의 법안소위를³⁾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제21대국회와 제20대국회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의 정의, 추진체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주요 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제21대국회에서의 토론 주요 요지>

쟁점	제정 필요 입장	신중 검토 입장
법 제정 필요성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 [소위원회('20.9.22.)]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각론적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 [소위원회('20.9.22.)]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바람직한	○어떤 가치가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사회적 가치를

2)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0. 9. 22.)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1. 3. 17.)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2021. 12. 31.)
3)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공청회)(2016. 11. 2.)
제355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7. 12. 14.)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2. 1.)

쟁점	제정 필요 입장	신중 검토 입장
정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므로 보완을 통해 신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 [소위원회('21.3.17.)]	법률적 용어로 규정할 수 있을지 논의 필요 [소위원회('20.9.22.)]
추진 체계	○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총괄 기능을 하는 것이 타당 [소위원회('20.9.22.)] ○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 보다는 각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소위원회('20.9.22.)]	
그 외 논의사항	○ 부처별 일률적 평가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오히려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소위원회('21.3.17.)]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평가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서는 안됨 [안건조정위원회('21.12.31.)]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제20대국회에서의 토론 주요 요지>

일자	제정 필요 입장	신중 검토 입장
법 제정 필요성	○ 자유시장경제를 보완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나아가자는 생각이 담겨 있는 법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음 [소위원회('17.12.14.)] ○ 영국 보수당이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사례를 볼 때, 이 법은 이념의 좌우 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님 [소위원회('17.12.14.)]	○ 사회적 책무와 책임은 포괄적인 기본법보다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소위원회('17.12.14.)] ○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 [공청회('16.11.2.)]
사회적 가치의 정의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권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사회 일선으로 끌어내리는 개념으로 의미가 있음 [공청회('16.11.2.)]	○ 사회적 가치 개념은 사회적 책무·공공성·공익 등의 개념과 어떤 관계인지 법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움 [소위원회('18.2.1.)]
총괄부처 문제	○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 등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추진하는 의미가 있음 [소위원회('18.2.1.)]	○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총리실을 평가하는 등 총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 [소위원회('18.2.1.)]
공공기관 적용문제	○ 해당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요청하는 법안	○ 사회적 가치의 정의 특성상, 민간 분야 우대 기준의 마련이 어렵고

일자	제정 필요 입장	신중 검토 입장
	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음 [소위원회('17.12.14.)]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사회적 가치 평가기준을 적용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소위원회('17.12.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기본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위원회('18.2.1.)], [공청회('16.11.2.)]	○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몇 개의 충돌이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으며, 동 제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규제가 생길 것으로 보임 [소위원회('17.12.14.)('18.2.1.)]

한편, 사회적 가치에 관한 국내의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아직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는 상황이며, 다만 개별법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 책임, 사회적책임경영, 공익적 목적 등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사용한 사례는 있음.

<사회적 가치 유사 개념에 관한 국내 입법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규정한 대표적인 입법례는 영국의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2012」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 2012]를 들 수 있음.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계약에 있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이며,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하고자 하는 바가 관련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 및 “조달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복리 증진을 위한 행동방향”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⁵⁾

이외에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공공조달지침(2004)과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2010) 역시 조달분야에서 일종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화한 사례로 볼 수 있음.

4) An Act to require public authorities to have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in connection with public services contract; and for connected purpose.

5) (3) The authority must consider -

(a) how what is proposed to be procured might improve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of the relevant area. and

(b) how, in conducting the process of procurement, it might act with a view to securing that improvement.

6)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2008/2250(INI))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외국 제도사례>

영국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 2012]

※ 입법목적

- (도입취지) 2009 EU의회 ‘사회적경제에 관한 유럽의회의 결의⁶⁾’ 이행

<사회적경제에 관한 유럽의회의 결의>

사회적경제가 이윤을 연대와 결합시키고,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경제적·지역적 결속 강화, 사회자본 생산, 능동적 시민정신과 연대 고양,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환경적·기술적 혁신을 지지함으로써 유럽경제의 필수적 역할 수행함을 선언

- (목적)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조달하려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의 창출을 고려하도록 규율
- (사회적 가치) 위탁 및 조달과정에서 서비스의 직접 구매와 그에 따른 결과 이상으로 창출되는 공동체를 위한 편익
 - 지역사회 요구, 제반사정, 공공기관 등의 특정 전략목표에 따라 유동적 해석

※ 주요 내용

- (의무이행기관) 공공기관, 정부 부처, 지자체, NHS(National Health Service)재단, 교통·화재예방·안전서비스 제공기관, 주택조합 등
- (적용범위) 보건, 주거, 교통, 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 조달·위탁
 - 상품, 노동계약은 불포함하나, 서비스와 결합된 계약의 경우 서비스의 해당가치가 더 우선할 때는 적용
 - 미적용 범위더라도 계약의 최고가치 획득을 위해 고려 가능
- (적용방법) 계약과정 시행 전 ①관련지역의 사회적가치 증진 정도, ②증진을 위한 방법에 대한 고려 의무

EU 공공조달 지침(2014 개정) 및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2010)

※ 공공조달 지침(2014): 회원국의 공공조달 규정 마련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 (목적)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발전과 확산
 - 조달계약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 물품, 공사, 용역에 관한 조달지침 등에 사회적 책임 고려할 것을 규정
- (주요내용)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낙찰원칙으로 하며 취약계층 고용 사업자에 대한 우선구매계약 규정

* ‘최고 가격-품질기준’, ‘최저비용’ 포함 → 비용고려시 낙찰당시 가격이 아닌 사회적·

환경적·혁신정책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생애주기 비용 강조

- 사회취약계층비율이 30% 이상인 운영상점, 사업자와 우선구매 계약 체결 가능

- EU법, 국내법, 단체 협약 또는 국제법에 기한 환경·사회·노동법을 준수하도록

‘범분야적 사회조항’포함 → 미준수시 낙찰 배제

※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2010)**: 공공조달지침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

○ (사회책임조달) 개별 조약 및 조달지침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성 기준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하나 이상 고려하는 조달

* 고용기회, 양질의 일자리, 사회권, 노동권의 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모두를 위한 접근계획, 윤리적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준수 등

○ (평가방식) 다양한 하위기준을 비교하여 가중치를 두는 여러 방식(상대적 가중치, 가·감점 체계 등) 활용

* 수요기관은 계약자가 낙찰될 수 있는 기준과 각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제시간에 맞춰 지정·공고해야 함

종합하면, 기본법 제정 여부는 과거 국회에서의 논의사항과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현행 개별 법률에 의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입법례도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로 규율하기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공공기관의 책무(안 제1조 및 제3조)

제 정 안
○ 목적 -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책무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안 제3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법령·조직 정비 및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의무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은 공공재 공급, 독점 방지 등 고유한 역할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일률적 책무 부여 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나. 정의(안 제2조)

1) 사회적 가치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제 정 안
○ ‘사회적 가치’의 정의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함 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생활환경의 보장 다. 노동의 존중, 근로조건의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라. 사회적 약자,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의 촉진 마. 보건·복지·돌봄 등 포용적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바. 중소기업·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의 확립 사.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보전,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 발전 실현 자. 윤리적 생산·소비·경영, 투명성, 청렴성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 공공조달, 재정, 투자 등에서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강화 카.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접근성 등 디지털 전환의 공공성 확보 타.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세대·지역 간 상생 및 사회적 연대 강화 파. 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민참여, 숙의와 협력에 기반한 주민자치·거버넌스 구현 및 공동체 활성화 하. 국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글로벌 사회적 가치의 확산 거.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안 제2조제1호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15개의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공익”과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개념임. 제정안의 목적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열거된 15개의 가치만으로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단순히 국가가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평가⁷⁾ 및 민간에 대한 지원사항⁸⁾을 정하는데 활용됨으로써 공공기관과 민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도 어떤 가치가 사회적 가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를 법률적으로 특정하기

-
- 7) **안 제11조(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8) **안 제12조(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 민간 단체, 기관 등을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한편, 기발의된 동일취지의 제정안⁹⁾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영역이고, 문화적 권리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간이 되는 사회적 권리이며, 일과 여가의 조화는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는 가치임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에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44호, 2024. 6.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생활환경의 보장 다. 노동의 존중, 근로조건의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라. 사회적 약자,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의 촉진 마. 보건·복지·돌봄 등 포용적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바. 중소기업·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의 확립 사.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보전,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 발전 실현 자. 윤리적 생산·소비·경영, 투명성, 청렴성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 공공조달, 재정, 투자 등에서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강화 카.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접근성 등 디지털 전환의 공공성 확보 타.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세대·지역 간 상생 및 사회적 연대 강화 파. 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민참여, 숙의와 협력에 기반한 주민자치·거버넌스 구현 및 공동체 활성화 하. 국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글로벌 사회적 가치의 확산 거.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의 정의(안 제2조제2호)

제 정 안
○ ‘공공기관’의 정의 -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 제2조제2호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정안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①), 추진실적의 제출(안 제7조②), 성과평가 의무(안 제11조),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대한 노력 의무(안 제8조⑤), 민간참여 지원·우대(안 제13조), 국제교류를 위한 노력 의무(안 제14조) 등의 적용을 받게 됨.

제정안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 및 지방의 공공부분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보다는 넓은 것임. 제정안처럼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보다 넓게 규정한 입

법령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공공기관”의 정의에 관한 현행 입법례>

법률명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1호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법률명	공공기관의 범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정안의 공공기관 정의 규정에 관하여 기획예산처는 모든 공공부문이 적용 대상이 되어 시행 초기 과중한 행정부담이 우려되고, 감사원 등 헌법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자료제출 및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감사원은 기발의된 동일취지의 제정안¹⁰⁾에 대하여 헌법 및 「감사원법」¹¹⁾에 따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데, 제정안에

1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44호, 2024. 6.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1)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

따라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성과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 직무상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한편,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위법령을 통해 법 적용대상을 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 제21대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모든 공공부문에 거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기본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던 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음.

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 정 안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안 제4조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 것임.

해당 조문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디까지가 제정안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인지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다른 법률에 사회적 가치 중 일부 가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제정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 관한 계획 수립이 면제되는 것인지 불분명함.

제정안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일부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법률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다른 법률에 규정된 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계획의 예시>

해당되는 사회적 가치	법 른 명	계 획 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생활환경의 보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제7조)
보건·복지·돌봄 등 포용적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16조)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계획 (제15조)
	환경보건법	환경보건종합계획 (제6조)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계획 (제7조)
노동의 존중, 근로조건의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5조)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계획 (제8조)
사회적 약자,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의 촉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제3조의2)
중소기업·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의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제4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보전,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 발전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10조)
	환경정책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4조)

제정안에서는 이와 별도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지역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적 가치 중 일부 가치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획으로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으로 별도의 협의·심의 절차를 거쳐 제정안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1조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규정¹²⁾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업무평가 관련 법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함.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으며, 동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종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재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의 세부 지표로 포함되어 평가 중임.

12) **안 제11조(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부문의 평가에 관한 현행법 규정>

대 상	근거 법률	평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및 재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17조	기관 자체,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기관 자체 (행안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등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20조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재정경제부장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평가)	재정경제부장관
	②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지방공기업법 제78조(지방공기업) 등 총 7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

<현행 사회적 가치 관련 성과평가지표 예시>

정부 업무평가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부문별 세부평가지표		
	부 문	세부평가지표	사회적가치
	행정관리 역량부문	전직원 대상 재해예방교육 실시	안전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율	인권, 노동권
		종이없는 공공서비스 구현, 전자증명서 활용	환경
	재정사업 부문	의료, 복지, 교육, 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효과	보건복지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자체 합동평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정과제별 세부평가지표		
	국정과제	세부평가지표	사회적가치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공임대 주택 공급	사회통합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자활참여 자 성공률 등	보건복지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중·소 동반성장	지자체 상생결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공정 노사관계 구축 /고용서비스 고도화	비정규직 남용방지, 취업지원 서비 스 달성률 등	노동권, 일자리
	산업재해 예방 강화 /국민 생활안전 확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축안전 수준평가 등	안전
	녹색경제 전환 /재활용 순환경제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재활용 분 리수거량 등	환경
공공기관 경영평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관리 부문 세부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사회적가치
	윤리경영	인권교육, 근로자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인권, 노동권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채용확대, 조기채용, 청년인턴·고졸인재·지 역인재 채용 노력 등	일자리
	안전 및 재난관리	산업재해 방지, 근로환경개선, 재난관리시스 템 구축 등	안전
	친환경·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녹색제품 구매 등	환경
	창업 및 경제활성화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기관보유 특허 등의 민간 기술이전 등	상생협력
	노사관계	노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노동권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 지방공사·공단 경영관리 부문 세부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사회적가치
	윤리경영체제 구축	갑질근절방안, 부패·성범죄·직장괴롭힘 등 방지노력	인권, 노동권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사고 건수 등	안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사회적약자 고용, 청년채용 등	일자리
	환경보전·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시설물 에너지절감 성과 등	환경
	공정사회 구현	불공정거래 개선, 이해충돌방지 노력 등	상생협력

자료: 기획예산처

이러한 상황에서 안 제11조는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성과평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평가체계 하에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 정 안
○ 기본계획의 수립 -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 ○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역추진계획은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지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추진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

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부 주무부처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취합하고 평가·포상하도록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는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6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추진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지역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추진계획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사회적가치위원회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 정 안
○ 사회적가치위원회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됨 -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위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기관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을 동수로 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사회적가치추진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속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둠 ○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둠 - 지역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안 제8조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계획 수립, 성과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와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와 시·도 차원의 심의·의결기관임.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1조에 따른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한편, 기획예산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¹³⁾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영역별 위원회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사회적 가치 관련 위원회 현황>

사회적 가치	위원회명 (소속)	주요 기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생활환경의 보장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재난·안전관리 중요 정책 심의
보건·복지·돌봄 등 포용적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사회보장 주요계획 심의, 제도평가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가치	위원회명 (소속)	주요 기능
노동의 존중, 근로조건의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고용노동 정책 및 관련 사회정책 심의
사회적 약자,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의 촉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	다문화 등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보전,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 발전 실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탄소중립·녹색성장 주요정책 심의

자료: 기획예산처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발의된 동일취지의 제정안¹⁴⁾에 대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기존 위원회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같은 법 제11조¹⁵⁾에 따라 법률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안 제10조에 따른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에 관하여는 다른 유사 입

1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44호, 2024. 6. 28)

제8조(사회적가치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와¹⁶⁾ 마찬가지로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조례¹⁷⁾를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7)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2019. 12. 15. 제정),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2021. 5. 20. 제정) 등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8조(사회적가치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위원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가치추진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둔다.

② 사회적가치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

제 정 안

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바. 성과평가 및 포상 근거(안 제11조 및 제12조)

제 정 안
○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 재정경제부장관은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안 제11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현행 정부업무 평가 체계 하에서 경시되기 쉬운 사회적 가치를 정부의 평가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 체계 마련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과거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사회적 가치에 관한 평가기준을 적용받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성과평가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1조(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민간참여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안 제13조 및 제14조)

제 정 안
○ 민간참여 지원 -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해 조달 및 계약 등 업무수행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 민간단체·기관 등을 우대 가능 ○ 국제교류·협력 강화 - 공공기관은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행사개최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노력

안 제13조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민간분야에 확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달 및 계약 등 업무수행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사업자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조달 및 계약과 관련한 지원 및 우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공공조달 관련 법령을 통해 구체적·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3조(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 민간 단체, 기관 등을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 공공기관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51